「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국 토 교 통 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예측・평가하여 선제적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기에 협의하는데 있다.

3.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의 합의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예정지역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수환경, 해양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및 공항예정지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공사중 및 운영시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등을수립·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주요과업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견수렴 포함) 지원
- 다.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개요 검토
 - ※ 최근 10년간 공항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협의내용을 분석·반영
- 라. 환경보전목표 수립
- 마. 대상지역 환경현황 조사·분석
- 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검토

- 사.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Scoping)
- 아. 대안의 설정 및 환경영향 예측 평가
- 자.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 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 초안, 본안, 조치계획(조치결과) 등)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카. 종합평가 및 결론(근거가 되는 사항을 부록*으로 첨부)
-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전략환경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용어 해설 등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 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다.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해양환경에의 영향),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추가 개발시 누적 영향으로 인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여부 등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 기 상

- 과거 3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 하여 제시한다.
 - 1)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ㆍ최저)
 - 2)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3)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4)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5)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2)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3)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대기질 조사범위는 공항건설 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현지측정조사는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해양환경

- 1) 연안의 해양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질, 해양물리(조석, 조류 및 파랑 등) 및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현황, 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및 보호종 현황 등을 조사한다.
-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으로 한다.
- 3)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계절별 환경 변화나, 주요 조사대상 생물의 출현시기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 및 기간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문헌자료와 현황조사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4)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가) 해양수질 : 조사 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 및 변화를 기술하고, 대상 해역의 수질평가 등급기준 등과 비교
 - 나) 해양물리 : 대상해역의 조석, 조류 및 파랑 등의 현황을 정리하고 기존 해수유동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검토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특성을 기술
 - 다) 해양생태계 현황 :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분류군별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해역의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종별로 문헌 및 현지조사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고 출현종의 생태적 특성 등을 기술
 - 라) 해양포유류 및 해양보호생물 조사 : 사업지역 인근 해양에 출현가능성이

있는 해양포유류(상괭이 등) 및 해양보호생물(잘피, 산호류 등)에 대해서는 문헌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출현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

- 5) 다음의 해양환경평가항목에 대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으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대책 수립
 - 나)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오염확산 수치모형실험 적정성검토)
 - 다) 기존의 해수유동실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수질예측과 저감대책(대안의 선정·비교 등) 수립
 - 라) 부유사이동 및 해수교환율에 대한 영향 및 대책
 - 마)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 바)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라. 지형ㆍ지질

- 1)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2)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가)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나) 특이한 지형, 해식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 다)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라) 토질시험결과 도표 작성

마. 조류 조사

- ※ 사전에 조류 및 항공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 1) 항공기-조류 충돌 대책수립을 위한 조류 서식지조사

- 가) 서식·출몰 조류종과 개체수 조사를 통한 지역별 조류현황 조사
- 나) 사업대상지역 철새의 이동 경로 조사
- 다) 서식·출몰 조류의 종별, 월별, 계절별 활동 추이 비교 분석
- 라) 서식·출몰 조류의 분포도 및 주요 서식지역 파악
- 마) 공항 예정지 주변 번식조류 현황 파악(법정보호종 중심)
- 바) 공항 예정지 주변 이동맹금류 조사
- 사) 국·내외 공항의 조류충돌 및 저감 사례 조사
- 2) 위치추적장치(GPS)를 활용한 조류 이동 추이 분석
 - 가) 위치추적장치 부착(총 50대 이상)
 - 나) 대상지역은 공항 예정지 인근
 - 다) 대상종은 오리류 25대, 갈매기류 20대, 고니류 5대 등 ※ 대상종 별 부착대수는 전문가 등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
 - 라) 각 종별 이동특성 및 행동권 분석
 - 마) 서식지 이용특성 분석
 - 바) 해당 조사 분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GPS데이터, 사진 등)는 누락 없이 발주처에 제출
-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제시
 - 가) 조류종의 공항 예정지내 유입가능성 및 위험성 평가
 - 나)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안

바. 소음ㆍ진동

- 1) 공항건설 및 운영에 따른 소음 영향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의 소음 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2) 소음영향 분석시 장래 항공수요 예측치를 반영한 항공기 운항횟수를 적용 하여 영향범위 및 소음도 수준을 도면 및 표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고, 소음 영향 분석시 웨클 및 Lden을 모두 적용한다.
 - ※ 소음영향 분석시 다각적인 분석기법을 활용

3) 공사시 발파 등으로 인한 육·해상 생태계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사.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 분석

- 1) 항공기 소음 측정
- 2)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작성
- 3) 항공기 소음피해 영향범위 분석(웨클 및 Lden 모두 적용)

3.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자연생대환경, 토지환경, 수환경, 해양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수립한 저감방안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책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 등을 총괄하고 제시함으로써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토록 한다.

- (1) 선정된 최적 대안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2) 저감방안은 환경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 도달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위주로 하되 가능한 항목의 경우 기술적인 방법론을 병행하되, 그 내용이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의 열거로 그쳐서는 안된다.
- (3)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시 이행 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수립된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

- (1) 최적대안이 관련 개발계획과 연계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할 저감방안과 구분하여 수립한다.
- (2) 개발사업 시행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과 시행 이후 결과의 비교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한다.

4. 보고서 작성

- 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사항과 조치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과 현재 우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탄소중립 공항건설 방안 연구용역(국토교통부, 21'10.~'22.11)」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나. 공항 기본계획에 따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다.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지역 개황, 검토항목·범위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 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여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한다.
- 라.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이용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며 협의 과정에서 보완의견이 제시될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기타사항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와 협업을 통해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언론, NGO 등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 이슈 등에 대해서 과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치 방안 등을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

-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용역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 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발주기관"이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용역기관"은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 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및 제출서류

- 가. 착수계 및 책임평가자 선임계
- 나.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 (1) "용역기관"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 평가자를 담당과업 분야별로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 및 조직 편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사업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평가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 (1) "용역기관"은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계획서는 용역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보안대책 및 참여평가자의 보안 각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과의 협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은 착수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평가자

- 가. 사업 책임평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기관과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용역에 종사하는 평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 교체되는 평가자는 종전 평가자의 자격 및 경력 동등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발주기관"은 참여평가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재대행 시행

-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재대행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용역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재대행 하기 2개월 전에 재대행이 필요한 사유, 재대행세부업무 내용, 재대행 비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대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용역기관이 임의로 재대행한 경우해당 재대행 용역비는 용역기관 부담으로 처리한다.
- 다. 용역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대행 업무에 적합한 재대행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대행자의 업무 불성실로 인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기관에 재대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하며, 재대행자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용역기관 부담으로 처리한다.

- 라. 계약서에 명시된 재대행 과업의 용역비는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재대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포함된 추정금액이므로 용역기관은 재대행자 선정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재대행 용역비 범위내에서 재대행용역비를 재산정하고, 대행 계약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마. 재대행 계약과 동시에 계약건명, 계약금액, 재대행 부분 및 내역, 재대행자, 계약이행기간, 재대행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에 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재대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용역기관"이 진다.
- 사.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은 본 과업지시서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 등

과업 과정에서 "용역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기관"은 전적으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2)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시행 시

7.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일로 부터 매월 말일 기준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수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1)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지시된 사항의 과업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업완료 최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8. 전문가 자문

-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용역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용역기관"은 각종 검토내용이나 계획수립내용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전 자문위원, 자문안건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다. 필요시 외국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라. 아울러 관계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개별자문을 실시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 마. "용역기관"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바. 자문료는 자문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자문료 집행기준은 관련규정(공무원 여비규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

9.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용역기관"은 과업완료 후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용역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 라.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폐기는 보안을 유지하며, 알아볼 수 없게 파쇄한다.
- 마.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 하여야 한다.
- 사.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아.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자.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알아볼 수 없게 파쇄하여야 한다.

- 차.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카.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가.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기관"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과업수행 중 "용역기관"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용역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다. 각종 개발계획,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단계별로 사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 각종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동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라. 직접경비는 실제 지출비용에 따라 정산하며, 정산은 비용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비용은 용역기관 부담으로 처리한다.

12. 과업의 변경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가.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 나. 과업완료 결과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 라. 기타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3. 보고서 및 성과품

가. 평가준비서 : 20부 및 USB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및 USB

다. 주민설명 안내문 : 50부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 : 30부 및 USB

- 마. 소음영향분석 등 기타(재대행 업무 포함) 조사자료 및 결과분석 자료는 부록으로 제출
- 바. 소음영향도면 등 성과품 : 분량 및 인쇄 품질 등은 별도 협의
- 사. 기타 별도과업 관련 기초자료 : 1식

Ⅳ.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M1	M2	М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전략환경 영향평가												
1. 사업개요 파악												
2. 전략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작성, 심의												
3. 환경현황조사 *조류이동성조사 포함 - 여름철새 3개월 - 겨울철새 3개월												
4.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 작성												
5.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